

**<2020 테마 행정법 정오표>(발행 2019년 9월 16일)**

페이지	수정 전	수정 후
3쪽 1줄	3) 기관양태설(부정설)	(3) 기관양태설(부정설)
6쪽 11줄	~ ‘오늘날 행정법의 특수성은 인정되지 않으며’	~ ‘ <del>오늘날 행정법의 특수성은 인정되지 않으며</del> ’ 삭제
33쪽 19줄	~ ‘공법관계로 본다.’	~ ‘공법관계로 볼 수 있다.’
98쪽 아래서 5줄	‘행정행위의 위법성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원고에게 있다.’	‘ <del>행정행위의 위법성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원고에게 있다.</del> ’ 삭제
281쪽 아래서 11줄	~ ‘판례의 입장으로 평가되는 절충설은’	~ ‘ <b>대법원</b> 판례의 입장으로 평가되는 절충설은’
289쪽 아래서 18줄	~ ‘판례는 긍정설을 취하고 있다고 평가된다.’	~ ‘ <b>대법원</b> 판례는 긍정설을 취하고 있다고 평가된다.’
371쪽 제85조	<b>제85조(행정소송의 제기)</b> ① 사업시행자,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은 제34조에 따른 재결에 불복할 때에는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<u>60일</u> 이내에, 이의신청을 거쳤을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<u>30일</u> 이내에 각각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. ~	<b>제85조(행정소송의 제기)</b> ① 사업시행자,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은 제34조에 따른 재결에 불복할 때에는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<u>90일</u> 이내에, 이의신청을 거쳤을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<u>60일</u> 이내에 각각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. ~